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FAQ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적합성 인증 제도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나요?



적합성 인증 제도는 기업에서 새로 개발한 융합 신제품(산업융합 신제품)의 융합 특성으로 인해 기존 표준 또는 기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안전인증(KC), KS인증 등 개별 법령 상의 인증을 취득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인증 제도입니다.

- ①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합니다.
- ②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적합성 인증 제품은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존 인증(타겟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적합성 인증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다만, 타법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 등의 혜택은 적합성 인증 제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합성 인증 제도에서 말하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존 인증(타겟인증)”은 무엇인가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존 인증은 기업에서 새로 개발한 융합 신제품(산업융합 신제품)의 융합 특성으로 인해 표준이나 기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융합 신제품이 취득할 수 없는 기존 법적 인증(KC인증, KS인증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존 인증(타겟인증)은 신청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타겟인증이란 융합 신제품이 취득하고자 하는 기존 인증으로, 융합 신제품의 융합 특성으로 인해 현재 취득하지 못하는 인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기존 인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적합성 인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적합성 인증 기준은 일반적인 표준이나 기술 기준과 다른가요?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 및 기술 기준과는 달리 적합성 인증 기준은 신청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적합성 인증 기준은 타겟인증의 표준 또는 기술 기준을 토대로 신청 제품의 융합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됩니다. 신청 제품에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 및 기술 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마련 가능합니다.



적합성 인증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적합성 인증 기준은 타겟인증의 표준 또는 기술 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안전성 수준과 신청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됩니다. 융합 신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표준에서 적용할 수 없는 항목들은 신청 제품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융합 신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완성합니다.



적합성인증협의체란 무엇인가요?



적합성인증협의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대상으로, 소관 부처 공무원과 소관 부처에서 위촉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적합성인증협의체의 가장 큰 역할은 신청 제품에 맞는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서면검토 및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최종 의결합니다. 이외에도, 적합성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관련 법령·표준 제·개정 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적합성 인증 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신청인은 신청서류 준비 외에 시험·검사가 가능한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장심사 등 타겟인증의 인증 제도에서 요구하는 인증 심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적합성 인증서는 타겟인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의제됨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인증 심사는 타겟인증의 심사 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합성 인증 제품은 인증 후 어떻게 관리되나요?



적합성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타겟인증의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겟인증이 KS인증인 적합성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3년 또는 1년 주기로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Tel. 043-870-5502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143

Tel. 031-8040-6831, 6832, 6833

www.knicc.re.kr